

집합투자기구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유** : (1) 시행령 개정(2010.06.13 시행)으로 인한 해지사유 변경
 (2)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0.07.2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지사유 변경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0년 3월 10일 기준	2010년 7월 14일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 기타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

		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009년 11월 28일 기준	<u>2010년 5월 28일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09년 11월 28일 기준	<u>2010년 5월 28일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2010년 4월 16일 기준	<u>2010년 7월 14일 기준</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⑧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